

감사결과처분요구서

No. 2022-					
소관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처 (●부)	2022	개선	변상	(추후 통지)	견책(2명) 훈계(2명), 주의(1명)

제 목 : 화성 ㄱ ㄴ토지취득세 미납 가산세 부과 특정감사

1. 현황

■부는 화성 ㄱ지구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추가로 하고자 공동사업자인 ○○의 사업구역인 ㄴ을 매입하려고 2020년 3월에 ○○와 매매계약을 맺었다. 2021.3월에 ○○에 토지 잔금을 지불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60일 안에 토지취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한(21.5.3)을 넘겼다. 9월 29일에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렸으나 이미 가산세 51,432,630 원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납부함으로써 공사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

2. 감사 결과

1) 관계 법령 및 사내 규정(판단 기준)

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나. 사내 규정

-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13조(손해배상)
- 인사규정 제43조(징계) 제1항·제2항
- 임직원 행동강령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항,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제1항
제9조(공·사구분) 제2항,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제2항

2) 위법부당 내용

담당 부장(B)과 처장(A)은 담당자들의 잔금납부보고 과정에서 관리자로서 경험적 판단이 요구되는 세금납부 등을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는 등, 처 업무 총괄자와 부 업무 총괄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또한 담당자 3인(C, D, E)은 동일하게 사업관리/감독 업무를 맡았으나 잔금 납부 과정에서 취득세 등 관련 세금문제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뒤 납세기한인 2개월이 지나갈 때까지 세금 문제를 추가로 검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지출결의서 불입자료인 용지매매계약서 제10조에는 ‘조세 공과금은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며’라고 뚜렷이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공사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 행동강령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항,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제1항, 제9조(공·사구분) 제2항,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제2항 등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公社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

3) 관계자 주장 및 판단

조사과정에서 관계자 5인 중 4인은 본인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C은 문답조사에서 “토지잔금 업무에 대해.....전혀 알지도 못했고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주었다면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책임분담은 억울하다”라고 진술하였다. 公社는 2021.2.10일에 직제규정에 따른 업무분장을 통해 D, E와 함께 C에게 ‘사업관리/감독업무(사업비 관리 등)’를 정식으로 부여하였으므로 3/2~5/3일 사이에 관련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公社 직제규정 제29조(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에 저촉된다. C의 주장대로 실무자들의 추가적인 업무분담으로 본인은 잔금납부 업무를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문서로 보고하지 않은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임의적 행위이므로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

3. 처분요구내용

본 특정감사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세금 미납을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고자 향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 ‘용지’, ‘토지’ 등 매입용지대금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취득세 확인’ 팝업창이 화면상에 뜨도록 차세대 MIS시스템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관련자 전원은 지방세법 제20조를 위반한 공동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공사 취업규정 13조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변상을 요구합니다.(단, 개인별 변상액은 재정보험지급액과 경기도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통보합니다)

아울러, 관리자 2인은 지방세법 제20조와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제2항에 저촉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직원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 제6조를 적용하여 각각 “주의”와 “훈계” 처분을 요구합니다. 담당자 3인 중 C와 D는 지방세법 제20조와 공사 취업규정 제6조, 임직원행동강령 제3조 제3항과 제6조 제1항, 제9조 제2항, 직제규정 제29조에 저촉되어, 인사규정 제4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공사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9(징계양정기준)의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에서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견책” 처분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담당자 1인은 당시 입사 1년7개월 차로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직원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 제6조를 적용하여 “훈계” 처분을 요구합니다.

[관련부서]

▶ △처(▲부) - 개선

※ ◇처 협조

[관련자(재정적조치)]

▶ (현)☆처 A - 변상

▶ (전)○처 B - 변상

▶ (현)○처 C - 변상

▶ (현)○처 D - 변상

▶ (현)○처 E - 변상

※ 재정보증보험 청구, 보험금 수령 시 잔여변상책임액 청구 및 회수 업무 : ◇처

[관련자(신분적조치)]

▶ (현)○처 C - 견책

▶ (현)○처 D - 견책

▶ 훈계 2인, 주의 1인